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9. 2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15일, 서종수 의원 외 12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5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9월 2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강희향 의원

가. 제안이유

문화, 예술, 경제,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우리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마포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홍보대사의 임무(안 제1조 ~ 제2조)
- 홍보대상 위촉 및 해촉(안 제3조 ~ 제4조)
-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(안 제5조 ~ 제6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조례안은

문화, 예술, 경제,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우리구 홍보

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마포구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의견으로는,

홍보대사는 주요활동사항은 마포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,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,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,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로 문화, 예술, 경제,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“마포구 홍보대사”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은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마포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